

<p>뉴욕 주 정보 기술 정책</p>	<p>번호: NYS-P08-005</p>
<p>IT 정책: 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 가능성</p>	<p>업데이트: 2010/05/17</p> <p>발행처: NYS ITS 주 최고 정보 책임자 IT 서비스 책임자</p> <p>정책 소유자: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</p>

## 1.0 정책 목적 및 혜택

이 정책은 주 기관이 개발, 조달, 관리 혹은 사용하는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 요구 조건을 명시합니다. 이 정책 개정은 2008년 8월 1일 발표된 NSY-P08-005에 대한 모든 이전 개정 사항을 대체합니다. 이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주의 인력을 좀 더 완벽하게 수용하고 모든 공공 구성원에 대한 정부 서비스 이용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.

## 2.0 기업 IT 정책 성명서

행정 명령 117 조의 섹션 2에 따라 주 최고 정보 책임자(뉴욕 주 기술국 책임자 겸직)는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보안 및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정보 기술 정책, 프로토콜 및 표준의 성립을 관장, 지도 및 조율할 권한을 갖습니다. 이 권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NYS ITS 정책 NYS-P08-002, 주 기업 정보 (IT) 정책, 표준 및 지침에 대한 권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## 3.0 정책 범위

이 정책은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, 조달, 관리 또는 사용하는 모든 주 정부 당국(NYS 행정 명령 #117에 정의된)에 적용됩니다. 이 정책의 기반은 29 U.S.C. § 794 (d)의

개정으로써 1973 년도 재활법 섹션 508 을 준수하여 연방 정부가 수립한 연방 섹션 508 표준, 하위파트 B, 섹션 1194.22 및 하위파트 C, 섹션 1194.3 입니다. 이 정책은 이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유효한 표준에만 적용됩니다. ITS 는 새로운 섹션 508 표준의 발표 시점에 이 정책을 수정, 보충, 개정, 철회 혹은 기록할 권리를 갖습니다.

## 4.0 정책 성명서

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은 29 U.S.C. § 794 (d)의 개정으로써 1973 년도 재활법 섹션 508 을 준수하여 연방 정부가 수립한 특정 이용 표준(아래 표에 기술)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섹션 508 표준	
하위파트 B, 섹션 1194.22	웹 기반 인트라넷 및 인터넷 정보와 애플리케이션
하위파트 C, 섹션 1194.31	기능 성능 기준

### 제 3 자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

이 정책의 발효 당일 및 그 이후부터 해당일 및 그 후에 실행된 모든 견적서, 계약 및 개정에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*계약 또는 조달에 따라 제공된 모든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물 혹은 프로그래밍은 뉴욕 주 기업 IT 정책 NYS-P08-005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준수해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정책은 개정, 수정 혹은 철회될 수 있으며 정부 당국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.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은 품질 보증 검사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뉴욕 주 기업 IT 정책 NYS-P08-005 를 준수해야 합니다. 그러한 품질 보증 검사는 (주 기관 이름, 계약자 혹은 기타)에 의해 수행되고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이 계약 혹은 조달에 적격이라고 판단되기 전 그러한 검사의 결과는 (주 기관 이름)을(를) 만족해야 합니다.*

위의 조항은 공공 혹은 민간 업체와 주 기관간의 계약에도 확대 적용되고 그러한 계약에는 주 기관을 대신한 혹은 주 기관을 위한 웹 기반 정보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제작, 개발, 구현 혹은 호스팅이 필요합니다. 이 파트의 요구 사항은 이 파트에서 식별된 모든 서비스의 아웃소싱에도 명확하게 포함됩니다.

그러나 주 기관 혹은 제 3 자의 관리 영역 밖인 인트라넷, 인터넷 혹은 엑스트라넷의 일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

## 면제

특정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이 이 정책을 준수하여 액세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,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거나 부당한 금전적 및 관리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이 정책에서 제외됩니다. 이 정책에 따른 근본적인 변경 혹은 부당한 금전 및 관리 부담을 결정한 모든 주 기관은 그러한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. 면제 시, 주 기관은 관련 웹 페이지(들) 상에 그러한 결정에 대한 정보 혹은 서비스를 확인하고 그러한 정보 혹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합니다. 이 정책의 어떠한 사항도 무엇이 근본적인 변경을 수행하는가 혹은 금전적 및 관리 부담을 지게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주 기관의 독립 권한 및 책임을 바꾸지 않습니다.

ITS 는 이 정책의 모든 면제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검토에는 기술 및 비즈니스 분석 그리고 이 정책 혹은 모든 적용 가능 표준에 종속되는 기타 프로젝트 문서, 기술 혹은 시스템 검토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.

## 5.0 정책 준수

---

정책 발효일은 2010년 5월 17일입니다. 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기관들은 다음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 가능성에 대해 계약 시점에 명시
- 기관 홈 페이지에 “액세스 가능성” 링크를 명확하게 제공. 링크된 페이지에 사이트의 액세스 가능성 및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(들)의 액세스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
- 새로운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가능 시 웹 기반 인트라넷 및 인터넷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의 준수 여부 검사 및 1년 단위로 대중이 접촉하는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검사
- ITS 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기관의 대중 접촉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가능성 상태와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정보의 검토를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기관의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한 일부 및 모든 불만 접수 및 대응에 대해 문서화합니다. 또한, 기관은 제품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본질상

“부당한 부담” 혹은 “근본적인 변경”으로 인해 기관이 이 정책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. ITS 는 이 문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6.0 주요 용어 정의

---

**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**은 *Internet 또는 intranet* 과 같이 네트워크 상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. 이 용어는 브라우저 렌더링 **markup language** 언어와 함께 브라우저 지원 언어로 코딩되거나 브라우저 제어 환경에 호스팅되어 **executable** 애플리케이션을 렌더링하기 위해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에 의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

**근본적인 변경**은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주요 기능 혹은 속성에 대한 커다란 수정 혹은 변경을 의미합니다.

**부당한 금전적 혹은 관리 부담**은 상당한 어려움 혹은 비용 부과를 의미합니다. 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부담이 유발되는 가를 결정할 때 **주 정부 당국**은 서비스, 프로그램 혹은 활동의 운영 및 자금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.

NYS 정보 기술 정책, 표준 및 모범 사례 지침에 정의된 모든 용어 목록은 “NYS 정보 기술 정책, 표준 및 모범 사례 지침 용어집(<http://www.its.ny.gov/policy/glossary.htm>)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## 7.0 ITS 연락처 정보

---

향후 개선을 위한 모든 질의 및 요청은 다음의 정책 소유자에게 제출하십시오.

**Policy Owner**  
**Attention: Application Delivery Services**  
**New York State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and Office for Technology**  
**State Capitol, ESP, P.O. Box 2062**  
**Albany, NY 12220**

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ITS 고객 관계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.  
[Customer.Relations@cio.ny.gov](mailto:Customer.Relations@cio.ny.gov)

뉴욕주 기업 IT 정책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 
<http://www.its.ny.gov/tables/technologypolicyindex.htm>

## 8.0 검토 일정 및 개정 이력

---

날짜	변경 내용
06/21/2004	원 정책 발표
10/25/2006	조달 언어 추가 및 표준에 대한 소규모 수정을 위해 개정
08/01/2008	표준 업데이트 및 정책의 모든 예외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
01/14/2009	NYS P08-005, NYS S08-005 및 G06-001 모범 사례 지침이 NYS P08-005 문서로 통합
01/27/2010	웹캐스팅 공개 회의 표준 NYS-S07-001 추가를 위해 수정됨. A.11.1, A.11.2 및 A.11.3. 준수 일정에서 삭제된 준수 일정이 통과. 모범 사례 지침에서도 유사한 수정이 이루어짐
05/17/2010	연방 표준 섹션 508, 하위파트 B, 섹션 1194.22 및 하위파트 C, 섹션 1194.31에 추가하는 대신 맞춤화된 NYS 표준을 대체하도록 개정
9/10/2010	보고 날짜를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개정
10/17/2011	섹션 5.0 개정
09/12/2012	현재 CIO, 기관명, 로고 및 스타일 업데이트 및 포맷 변경
09/12/2014	검토 예정

## 9.0 관련 문서

---

NYS-S07-001 웹캐스팅 공개 회의 표준